
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
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

의안 번호	772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22.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

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(2021.3.1. 전체 발효) 중미 5개국(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) 외에 과테말라 공화국(이하 “과테말라”)과도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,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·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동 의정서를 통해 과테말라는 한-중미 FTA에 가입하며, 동 FTA 당사자에 과테말라를 포함하는 등 한-중미 FTA 협정문 (이하 “협정문”) 전반에서 과테말라에 적용하는 사항을 추가(안 제1조-제18조)

- 나. 협정문 제2장 “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”의 부속서 2-나 “관세철폐”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1의 한국과 과테말라의 양허표를 추가(안 제4조 및 부속서 1)
- 다. 협정문 제8장 “정부조달”의 부속서 8-가 “적용범위”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2의 과테말라의 양허 적용범위 추가(안 제9조 및 부속서 2)
- 라. 협정문 제9장 “투자”, 제10장 “국경간 서비스”, 제11장 “금융 서비스”의 관련 부속서에 동 의정서 부속서 3의 과테말라의 서비스·투자 유보목록 추가(안 제19조 및 부속서 3)
- 마. 그 밖에 의정서의 부속서 및 각주가 한-중미 FTA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, 동 의정서 발효일 등을 규정(안 제20조-제24조)

참고사항

- 가. 영향평가결과 :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
- 나. 예산조치 :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
- 다. 국내산업 보완대책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※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보고 참고
- 라. 입법조치 :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
- 마. 협정 체결경위

- 2021. 9. 협상 개시
- 2023. 9. 5. 협상 타결
- 2023. 12. 26. 국무회의 의결
- 2024. 1. 8. 서명(과테말라시티)
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
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

“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
정 가입의정서”에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
한다.

붙임 :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
정 가입의정서
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
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

**PROTOCOLO SOBRE LA ADHESIÓN DE LA REPÚBLICA DE
GUATEMALA A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LA
REPÚBLICA DE COREA Y LAS REPÚBLICAS DE
CENTROAMÉRICA**

**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
GUATEMALA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
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
CENTRAL AMERICA**